

**주요국의 무역·기술안보
정책 비교를 통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연구
(개인과정)**

2024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김 영 희)**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개요

II. 본 론

1. 수출통제의 의미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개요
 - 1) 수출통제의 의미
 - 2) 수출통제 개념의 등장 배경
 - 3) 수출통제의 역사적 흐름과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등장
2.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
 - 1)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역사적 흐름
 - 2)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 개요
 - 3) 우리나라 수출통제 최근 동향

3. 주요국의 수출통제 제도 최근 동향

- 1) 미국**
- 2) EU**
- 3) 영국**
- 4) 일본**

4. 수출통제 제도의 교육과 홍보

- 1) 우리나라**
- 2) 미국**
- 3) 영국**
- 4) 일본**

5. 전략기술과 국제 공동연구 현장에서의 수출 통제 제도

Ⅲ. 결 론

- 1. 연구결과 요약**
- 2. 수출통제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

IV. 참고 문헌

<국외 단기훈련 개요>

1. 파견 국가 : 영국
2. 교육기관명 : 에든버러 대학교
(University of Edinburgh)
3. 교육 분야 : 무역안보통상
4. 교육 기간 : 2023. 7.17. ~ 2024. 1.11.
5. 교육 주제 : 주요국의 무역·기술안보 정책 비교를 통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연구

<훈련(교육)기관 개요>

교육기관 명칭	에든버러 대학교(연구센터, 공과대학 산하)
교육기관 성격	대학연구소
기관 소재지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市)
홈페이지	http://ed.ac.uk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83년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에 의해 세워진 종합 대학 • 에든버러대학교 연구센터(Research Office)는 공과대학 산하 연구 전담 기관으로서 연구관련 펀딩·수출통제 등 제도 교육
주요기능 및 수행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기관과 공동 연구 시 수출통제 관련 사항 컨설팅 • 수출통제 관련 정부 기관(수출통제 합동 유닛, ECJU)과 협력하여 제도 홍보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주요국들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이행 수단인 수출통제 제도를 점차 신형·첨단기술 보호 등 경제·산업안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도입하고 있다. 기존 수출통제 제도는 특정 물품이 무기로 전용(轉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략물자 등 '물품' 위주로 통제해 왔으나, 점차 '신형·첨단기술' 위주로 통제하는 등 경제안보 수단으로 부상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화웨이, SMIC 등을 대상으로 한 對중국 수출통제이다.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WA(재래식 무기), NSG(핵 무기), AG(생화학 무기), MTCR(미사일)

중국 또한 서방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수출통제제도」 체계를 고도화 하고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社을 제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흑연·갈륨 등 반도체 재료에 사용되는 물품의 수출을 통제¹⁾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무기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닌, 핵심 광물 공급망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또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부합 하면서도 우리 산업 보호를 위한 수출통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할 경우, 국제사회의 우려거래 대상자(Denial List)로 등재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제도 숙지가

1) "China Restricts Export of Chipmaking Metals in Clash With US" | Bloomberg | 2023.7.3.

"China imposes export curbs on graphite" | Reuters | 2023.10.20.

필수적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 각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어 수출통제 제도가 생소한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 제재 동향 및 우리 제도 개정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수출자들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주요국들의 무역 및 기술 안보 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정책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신흥,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여러 국제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출통제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또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 홍보와 교육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제 공동 연구 및 안전한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교육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관련 아웃리치의 개선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특히, 훈련국(영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교육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수출통제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아웃리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현장의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 연구와 수출자들의 안전한 수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II. 본 론

1. 수출통제의 의미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개요

1) 수출통제의 의미

수출통제(Export Control)란 국제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하여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국제적 이동을 통제하는 조치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가 평화적인 목적이 아닌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 및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 등의 무기로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하는 등 전용(轉用)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수출통제는 국제적 합의에 의해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각국의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2) 수출통제 개념의 등장 배경²⁾

수출통제라는 개념의 등장은 20세기 초 혼란한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고, 첨단기술 등 전략물자의 부적절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들이 공급한 무기가 적군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후 수출통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영국은 1939년 수출통제 관련 법률*을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이 법령은 군사 및 이중용도 상품을 적국에

2) "Historical Background of Export Control Development in Selected Countries and Regions" | Tamotsu Aoi | 2016.4

수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또한 무기, 군수품 및 탄약 수출의 무허가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였다.

* (英) Import, Export and Customs Powers Defense Act (1939. 1. 1.)
(佛) Decree-Law (1939. 4.18.)

3) 수출통제의 역사적 흐름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등장

이처럼 전시에 적군의 군사력 억제를 위해 도입되기 시작한 수출통제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냉전시대로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1949년 11월, 미국의 주도로 설립된 COCOM³⁾(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은 서방 국가들이 소련과 동맹국들로의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⁴⁾ 이는 '40년대 후반부터 도입된 소련제 미그(MiG) 15 전투기에 당시 영국의 전략물자인 제트엔진 기술이 활용되는 등 공산국가들이 첨단기술을 무기 제작에 활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COCOM의 통제 대상은 주로 군사 기술, 선진 기계류, 전자 장비 등이었다. 다만, COCOM은 회원국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는 비공식적인 국제협정인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 형태로 운영되었다.

COCOM과 더불어 다자수출통제체제(Regime)라 불리는 여러 체제들이 등장했다. 이들 체제는 특정 종류의 무거나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처음에는 무기 확산 방지(non-proliferation)를 위한 체제들 위주로 구성되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3) 「수출통제총람(2020)」 | 전략물자관리원 | 2020

4) 「경제안보와 수출통제」 | 정인교·조정란·이은호 | 2023

표 2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현황(2024. 1월 기준)

체제명	출범연도	통제 대상	회원국 수	 가입
바세나르 체제 Wassenaar Agreement (WA)	1996년	재래식 무기 (군용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	42개국	1996년
호주그룹 Australia Group (AG)	1985년	생물무기, 화학무기 (생물·화학무기 및 관련 이중용도 품목)	43*개국	1996년
핵 공급국 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	1974년	핵무기 (원자력 및 관련 이중용도 품목)	48개국	1995년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1987년	미사일 및 운반체 (미사일 및 관련 이중용도 품목)	35개국	2001년

* 카자흐스탄은 BWC, CWC 당사국은 아니나 AG 가입국(2015년~)

1974년 핵 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이하 NSG)⁵⁾이 가장 먼저 발족하였다. 핵 확산 방지조약(NPT)에 기반을 두고 있는 NSG는 핵 물질, 기술 및 관련 장비의 수출을 규제한다.

다음으로, 1985년 호주 그룹(Australia Group, 이하 AG)⁶⁾이 발족하였는데, AG는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관련 물질의 수출을 통제하는 체제이다. 화학무기 등 무기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과 생물학적 제재가 주요 통제 대상이다.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이하

5) NSG 웹 사이트 : <https://www.nuclearsuppliersgroup.org/index.php/en/about/about-the-nsg>

6) AG 웹 사이트 : <https://www.dfat.gov.au/publications/minisite/theaustraliagroupnet/site/en/introduction.html>

MTCR)⁷⁾는 1987년에 발족했으며, 미사일 및 무인 항공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기술 등이 포함된다.

한편, 1990년대 초 소련 해체 이후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동구권 국가들은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신생 국가인 러시아도 COCOM 체제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그렇게 1994년 코콤은 해체되고 1996년 7월 새로운 수출통제체제가 이를 계승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 WA)⁸⁾이다. WA는 재래식 무기가 분쟁 다발 지역이나 테러지원국으로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류 및 무기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즉, WA는 전통적 군사 장비 및 이중 용도의 상품과 기술을 통제한다. 여기에는 고성능 컴퓨터, 감시 장비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이중 용도란, 상업적·군사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일컫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공공시설에서 널리 쓰이던 열화상카메라는 군사 장비에 야간 전투 능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이중용도 품목으로 간주 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포함된다.⁹⁾

이러한 다자간 합의로 마련된 체제들은 국제적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고, 물품이나 기술, 소프트웨어가 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COCOM과 마찬가지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는 '협약'일 뿐,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회원국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상황이 급변

7) MTCR 웹 사이트 : <https://www.mtcr.info/en>

8) WA 웹 사이트 : <https://www.wassenaar.org/about-us/>

9)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對러시아 제재...무엇이 금지되고, 허용되는가" | 이코노미 조선 207호(권소담) | 2022.3

하였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결의 1540호(2004. 4.28.)를 채택하여 모든 회원국 정부에게 대량파괴무기 및 그 관련 물자의 연구, 개발, 제조, 유통, 수출 등 모든 공급망(Supply Chain)에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은 4대 수출통제 체제를 바탕으로, 자국의 수출통제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여 국제체제의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UN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하고 있다.¹⁰⁾

최근에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등 고도의 기술들에 대한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글로벌 첨단, 신형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어 기술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

1)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역사적 흐름

우리나라가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80년대 후반,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COCOM 수준의 수출통제 법령 등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 첨단기술의 국외 이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7년 9월, 한-미 양해 각서(MOU)*를 체결한 후, 1989년 3월 국회에서 비준 받음으로써 수출통제 관련 제도 마련의 토대를 다지게 되었다. 이후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90년 7월부터 COCOM 내용 중 일부**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COCOM 회원국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준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¹¹⁾

*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 IC(Import Certificate, 수입증명서) 및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발급 제도 등

10) 「수출통제의 이해」 | 전략물자관리원 | 2015

11) 「코콤, 우리의 대응방안: 내부통제제도」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 1990

1992년에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1993년 7월에 「전략물자 수출입공고¹²⁾ (상공부)」 및 「기술수출공고(과학기술처)」를 고시하였다.¹³⁾

이후,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을 위해 1995년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전면 개정하여 원자력,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의 수출통제도 시행함에 따라 4대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하게 되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 9.11 테러 이후 UN 안보리 결의 1540호로 인하여, 회원국인 우리나라 또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캐치올 규제(Catch-all) 도입 등을 위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대응하였다. 캐치올 규제란 국제 수출통제체제 등의 통제 여부와 관련 없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이를 운반하기 위한 기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All) 품목을 통제(Catch)하기 위한 규제이다.¹⁴⁾ 2014년에는 전략기술 이전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CP(Compliance Program,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전면 개정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전략물자관리원¹⁵⁾을 설립하고,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Yestrade)를 운영하는 한편, 對이란, 對러시아 국제제재에도 동참하는 등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2) 전략물자 수출입공고('93.7~'04.10) → 전략물자 기술 통합공고('04.10~'07.4) → 전략물자 기술 통합고시('07.4~'09.11) 전략기술 수출입고시('09.11~) 등으로 명칭 변화

13) "(특별기고) 전략물자(COCOM) 수출입 공고 해설" | 전자진흥(기고자 : 남기만) | 1993.8

14)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남북경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홍익표) | 2005.8

15)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07년 전략물자관리원으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2024.1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는 「대외무역법」과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¹⁶⁾ 다만, 「방위사업법」상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한편,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란 WA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품목을 일컫는다. 또한, 수출의 의미에는 단순히 물품을 국외로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부터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인에게 이전되는 것도 포함된다. 수출의 대상 또한 물리적인 물건의 이전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교육, 훈련 등 구두나 행위, 기록 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기술의 이전도 해당된다.¹⁷⁾

<전략물자 등의 판정>

이처럼 수출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의 판정 절차가 필요하다. 「대외무역법」 제 20조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2조에 따르면, 판정에는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이 있는데, 자가판정은 수출자가 판정주체가 되는 판정이고, 전문판정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문판정기관이 판정주체가 되는 판정이다. 자가판정은 별도로 유효기간을 두고있지 아니하나, 수출허가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16)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 2023.6

17)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기술이전)

2년 이내의 자가판정서만 유효하다.¹⁸⁾ 또한, 자가판정을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판정은 별지 제4호서식인 전문판정서에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으며, 자가판정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은 2년이다. 단, 해당 품목에 대하여 고시가 개정될 경우, 그 날짜에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자가판정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Yestrade)를 통해 수출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간편함이 있으나, 판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전문판정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긴 하나, 판정 처리기간이 최소 15일은 소요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러한 판정 절차를 통해 전략물자로 판별될 경우 허가기관을 통해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 우리나라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한 캐치올 규제¹⁹⁾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황허가 대상판정을 받으면 된다.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판정 또한, 자가판정과 전문판정 두 가지 모두 이용 가능하며, 효력도 동일하다. 단, 상황허가의 경우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수출자의 자가판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18)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2호 2. (중략) 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

19)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③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

상기의 판정 절차를 통해 수출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나 기술, 상황 허가 대상품목이나 기술(이하 전략물자 등)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허가기관을 통해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허가는 크게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나뉘져 있으며, 포괄수출허가는 다시 사용자포괄수출허가와 품목포괄수출허가로 나뉜다. 이 외에도 앞서 언급한 非전략물자에 대한 상황허가가 있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중개·경유·환적 허가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먼저, 개별수출허가는 전략물자의 수출에 대하여 건별로 신청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자격이 없으며, 허가 유효기간은 1년이다. 포괄수출허가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포괄수출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P)로 지정 받은 기업만 신청 및 발급 가능한 것으로, 매 건 별 수출허가를 받는 대신 수출자에게 한 번에 포괄적으로 수출을 허가해 주는 형태의 허가이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8 “사용자 및 품목 포괄수출허가” 대상 품목만 가능하므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포괄수출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포괄수출허가는 다시 사용자포괄수출허가와 품목포괄수출허가 두 가지로 나뉜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란 수출품의 최종 사용자(End User)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허가로서, 최종수하인 외 구매자, 목적지 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 기간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따라서 수출자는 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수출 수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출할 수 있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중 수출품의 목적지 국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6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 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서 가 지역이란, 앞서 언급한 4대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로, 2024년 1월 기준 총 29개국에 이에 해당한다. 또한,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구매자에게 대상품목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와 전략물자 물품 등에 대한 2년 이상의 장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해외 전시회 참가로 최종사용자가 미확정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신청이 가능하다.²⁰⁾ 유효기간은 가 지역일 경우, CP 등급이 AAA인 경우 등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 31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할 경우 3년 이내이며, 그 외의 경우는 2년 이내까지 유효하다.

이러한 사용자포괄수출허가는 수출하는 전략물자 등이 대리점을 통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전시회 출품 등으로 인해 최종 사용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받는 허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종 사용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용자품목포괄허가와 달리, 품목포괄수출허가는 수출자에게 품목에 대한 자율성을 주는 수출허가 제도이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와 마찬가지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만 신청이 가능한데, 품목포괄수출허가는 보다 요건을 엄격하게 두고 있다. 목적지 국가가 가 지역이라면 CP의 AA, AAA등급이 신청 가능하나, 나 지역일 경우 CP AAA등급만 신청 가능하다. 이러한 품목포괄수출허가는 “플랜트 건설계약²¹⁾ 등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품목이 장기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타 사업의 특성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²²⁾ 따라서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때는 프로젝트 개요, 수출 예상 품목의 개요 등

20)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8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제2항제1~4호
21) 「대외무역법」 제32조 ④ 1.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재·장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설비의 수출
2.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
2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4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제2항제1~3호

을 작성하여야 한다.

즉, 품목포괄수출허가는 특정한 구매자, 최종국가, 최종수하인, 최종 사용자 최종사용 용도에 따라 허가 범위 내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 허가 유효기간동안 대상품목, 수출여부, 수출수량을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이다.

수출허가를 받으려는 품목에 따라 관련 법령과 허가기관이 다소 상이하다. 일반 산업용 전략물자(「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이중용도품목 제1부~9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군용물자는 방위사업청(「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3 군용물자품목 및 별표2에 해당하는 품목이 수입국 정부나 군 관련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원자력전용품목(「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제10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허가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의 최근 동향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해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y)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으며²³⁾, 한편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으로 인해 유사 입장국들 사이에서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자적인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로서 수출통제 제도 이행에 앞장서고 있기는 하나, 자국의 신기술 보호를 위해 「수출통제 개혁법」을 제정한 미국이나 「경제안보전략 패키지」를 수립한 EU 등과 비교하면 독자적인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2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아시아 무역안보 정책 공조 및 기술통상 협력 강화키로” | 2021.11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對 러시아 제재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지속 개정하여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3년 5월에는 또한,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UN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국제사회 평화를 저해하고 있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북한전용 감시대상품목(Watch-list)에 인공위성 분야 품목 77개를 추가하여 UN 안보리 결의상 캐치올(catch-all) 조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²⁴⁾

* 캐치올(catch-all) 제도 : 다자수출통제(NSG, MTCR, AG, WA)의 통제품목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any item)의 거래 금지 의무화 (UN 안보리 결의 2270호 27항)

3. 주요국의 수출통제제도 주요 특징 및 최근 동향

본 장에서는 주요국의 수출통제 제도 중 주요 특징을 위주로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각국의 수출통제 관련 최근 이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²⁵⁾

미국은 COCOM과 WA를 설립을 모두 주도한 수출통제의 선도 국가이다. 이러한 미국의 수출통제 체계는 다양한 법령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핵심은 이중용도 물품(Dual-use items), 즉 군사적

24) "정부, 北위성 관련 물품 수출통제한다...'워치리스트' 보완" | 연합뉴스 | 2023.4

"한미 '암호화폐' 북한인 동시 제재...'인공위성' 품목 수출통제" | KTV | 2023.4

25) 이 장의 내용은 "미국 수출통제 가이드(전략물자관리원, 2021)"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용도와 민간의 상업적 용도 두 가지 모두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관리하기 위한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이다. EAR은 이중용도 항목에 대한 수출, 재수출 및 국외이전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미국산 제품과 기술의 이동을 관리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대외정책 목표 및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AR은 1979년 제정된 舊 「수출관리법(Export Control Act)」을 근거로 최초 시행된 이후,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계속 운영되어 왔다.

그러던 2018년, 미국은 「수출통제 개혁법(ECRA)」과 「외국인투자위험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하여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심사 분야에서 보다 중요한 변화를 주었다. 이 변화들은 기존의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에 기반한 수출통제 체계와 비교하여 몇 가지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먼저, 미국은 수출통제의 목적을 기존 비확산(non-proliferation) 원칙에 따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 부패 방지, 신형기술 및 기반기술의 보호와 같은 다양한 사유들을 포함하였다. 「수출통제 개혁법(ECRA)」은 신형기술과 기반기술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술들이 테러지원국이나 제재 대상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위험현대화법(FIRRMA)」은 기술, 인프라, 민감 정보 분야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이 법은 외국인에게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없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투자를 심사 대상에 포함 시키는 등, 보다 높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금융제재를 통해 제재 위반자와 거래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벌금 부과나 거래 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제재는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통제 사유별로 하나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인 수출통제 목적인 비확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즉시 러시아에 대해 수출통제를 단행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의 주요 금융기관, 에너지 부문, 방위 산업, 그리고 고위급 관료들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즉, 고급 승용차나 양주, 사치품 등은 언뜻 보면 국제평화 저해와 무관해 보이나, 전쟁을 주도 중인 러시아의 고위층에게 제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²⁶⁾

이러한 대러시아 제재의 핵심 목적은 러시아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러시아 정부의 군사력을 떨어트려 전쟁을 종식시키고 국제평화를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여 러시아가 달러화로 결제를 하거나 받지 못하게 했다. 이는 러시아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에 압박을 주기 위함이었다.

또한, 최근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수출통제 사유인 신기술 보호와 관련한 대표적인 예는 트럼프 행정부부터 본격화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는 신기술 보호를 통한 자국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기술 경쟁을 배경으로 한 경제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6) "미국 수출통제 제도 심층 분석 및 시사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2022.5

미국 정부는 특히 고급 반도체 제조,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관련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중국으로의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Entity List에 중국 기업을 추가하는 것에서부터, 특정 기술이나 제품의 수출 시 미국 정부로부터의 사전 승인 요구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Entity List에 포함된 기업들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 상품, 소프트웨어의 수출, 재수출 등을 받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수출통제 조치들은 미국과 중국 간 기술 전쟁의 일환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는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의 핵심 기술로, 이러한 조치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수출통제 정책은 중국과의 기술적 경쟁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꼭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신기술의 보호는 최근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꼽힌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이 기술들이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적대적인 국가에 의해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다양한 통제를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감시 및 모니터링 기술과 같이 인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이전을 제한함으로써, 인권 침해 행위를 억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중국 기업과 기관을 Entity List에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미국이 인권 보호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밝힘과 동시에, 인권 침해에 대한 관련 국가 등의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미국은 미얀마와 쿠바에 대해서는 군사 쿠데타와 인권 침해,

부패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부패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 평화를 위하여 수출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²⁷⁾

이러한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역외규정²⁸⁾²⁹⁾'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포함된 역외규정은 미국 기술, 소프트웨어, 제품이 미국 밖으로 이전될 때 적용되는 통제를 일컫는다. 이러한 역외규정에는 앞서 언급한 EAR을 바탕으로, 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 De minimis(최소 편입비율) 등이 있다. 역외규정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함이며, 미국 기술이 적대적이거나 우려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FDPR은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조된 외국 제품이 특정 대상(Entity, 국가, 조직, 개인)에게 제공될 때 적용된다. 즉,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외국 제품이 특정 제재 대상에 수출될 경우 해당 수출은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있을 때, 미국 기술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제재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미국의 수출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De minimis 규칙은 외국산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의 미국산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제품의 재수출이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미국산 비율이 높은 외국 제품도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7) "인권을 근거로 부과되는 수출통제 및 제재" |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Brief Vol.2 (박효민·이인화) | 2022.12

28) "미국 수출통제 제도 심층 분석 및 시사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2022.5

29) "경제제재/수출통제 관련 외국법령 역외적용 동향 및 시사점" |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Brief Vol.1 (김준범·박정민) | 2021.6

한편, 재수출 통제는 미국산 제품, 소프트웨어, 기술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재수출될 때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따라야 함을 명시한 규정이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기술과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사용되는지를 통제하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역외규정은 미국 기술과 제품에 대해 광범위한 통제를 가능케 하며,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 유럽연합

유럽연합(이하 EU)의 수출통제 제도는 EU 이사회 규정(Regulation 428/2009)을 바탕으로 하여 각 회원국별로 자국의 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즉, EU 회원국들은 EU 차원의 수출통제 제도에 더해, 자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³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의 심화, 수출통제 환경의 변화, 자국 보호주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주요국들, 그리고 EU 회원국들의 독자적인 신기술 및 첨단기술 수출통제 확산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기존 이중용도 품목 위주의 EU 수출통제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가령, 지난 2022년 미국이 고성능 컴퓨팅 칩, 관련 소프트웨어 및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한 것이나, 이에 대응하여 중국이 갈륨 및 게르마늄 함유 제품, 첨단 무인항공기(UAVs), 그리고 흑연 및 흑연 함유 제품에 대해 일련의 수출 통제를 도입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EU 회원국인 네덜란드가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단행한 것도 언급하였다.³¹⁾

30) 「수출통제총람(2020)」 / 전략물자관리원 저

31) White paper on Export Controls (COM(2024) 25 final) | EUROPEAN COMMISSION |

EU는 이러한 최근의 추세가 만장일치가 필요한 국제수출통제체제 때문으로 보았다. 즉, 글로벌 제재 대상인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국제체제 당사국이므로, 적시에 물품이나 기술 목록을 개정할 수 없어 글로벌 가치사슬 및 EU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EU는 2023년 6월³²⁾과 2024년 1월³³⁾, '경제안보 패키지'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EU는 2021년 개정된 '이중용도 수출통제 규정³⁴⁾³⁵⁾'을 통해 민감성이 높은 신기술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며, EU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조율된 수출통제 제도를 강화할 예정임을 알렸다. 가령, 5G 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위험도가 높은 공급자를 배제하고, 통신 및 에너지 인프라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할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규제를 통해 외국인 투자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검토하며, 이를 통해 제3국의 기관 또는 제3국의 통제를 받는 EU 기관들이 역내에서 기술 개발 및 혁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한다.

즉, EU는 사이버 보안, 신기술 보호, 외국인 투자 심사 등 미국과 유사한 분야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미국이 중국을 특정한 것과 달리 EU는 글로벌 보편적인 가치(인권보호, 환경보호 등) 등에 다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3) 영국³⁶⁾

2024.1

32)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태현) | 2023.7

33) White paper on Export Controls (COM(2024) 25 final) | EUROPEAN COMMISSION | 2024.1

34) Regulation (EU) 2021/821

35) "미·중·EU의 국가·경제·기술안보 전략과 시사점" | STEPI Insight 제300호(백서인·윤여진·성경모·양승우 | 2022.8

영국의 수출통제 법령은 EU의 수출통제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국은 2008년에 「수출통제령(Export Control Order, ECO 2008)」³⁶⁾를 제정하여 EU 수출통제 규정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법령을 구축하였으며,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법령 체계에 큰 변화를 두지는 않았다.

영국의 수출통제 제도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무기, 이중용도 상품 및 기술, 그리고 인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이동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ECO 2008」 내에 명시된 영국의 안전 및 인권 목록이다. 이 목록은 인권 침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과 기술(고문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나 억압적인 정권에 대한 기술 지원)에 대한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인권 보호라는 범 글로벌적 가치에 기여한다.

이러한 영국의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Export Control Joint Unit (ECJU)이다. ECJU는 국제통상부 내에 설립되었으며, 국방부와 외교부를 비롯한 다른 정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러한 범부처 조직의 결성은 수출통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며, 미국이나 한국과 같이 여러 부처가 각 부처에서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체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영국도 미국이나 EU 등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경제안보를 위한 새로운 법안인 「국가안보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³⁷⁾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안보나 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외국인의 영국 내 사업체나 자산 인수에 대한 심사 체계를 확립하고자 도입되었다. 첨단소재, 인공지능, 통신과 같은 17가지 핵심 분야에서의 외국인 인수 거래는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36) 이 장의 내용은 「수출통제총람(2020)」 / 전략물자관리원 저"를 참고하였다.

37)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 |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2-1호(최창수) | 2022.1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적 신고의무가 부과된다는 규정이다.

아울러, 영국은 국제 정세에 발맞추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 12월 6일,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 46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³⁸⁾ 이 제재는 벨라루스, 중국, 세르비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등 제3국의 Entity를 포함하며, 러시아에 장비와 부품을 수출하는 외국 군사 공급업체, 바그너 그룹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행위자, 그리고 러시아가 석유 관련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림자 함대" 선박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영국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제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준다.

4) 일본³⁹⁾⁴⁰⁾

일본은 4대 수출통제체제(레짐)의 초기부터 참여하는 등 미국, EU와 마찬가지로 수출통제 선도 국가에 속한다. 일본의 수출통제는 1952년 COCOM 가입으로 본격화되었으며, 공산권에 대한 첨단물자와 기술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통제 법령은 1949년 처음 제정된 외국환 및 외국거래법(외환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초기에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점차 대외무역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두는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했다.

특히, 1987년 발생한 도시바 기계의 COCOM 위반 사건은 일본 정부가 수출통제체제를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제도가 명문화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와 벌칙이 강화되었다.

38) "Notice to Exporters 2023/24: further sanctions against introduced in December 2023" (www.gov.uk) | 2023.12

39)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연구" | 전략물자 수출통제 Brief 2019 Vol.3(정하정) | 2019.11

40) "일본의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법무부 통상법률(송준헌) | 2022.2

한편, 1990년대 들어 소련 해체 이후 COCOM 체제가 해체되고, 1996년에는 재래식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수출 통제체제인 WA가 발족하는 등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로 일본의 수출 통제제도도 점진적으로 변화하였다. 일본은 WA 합의에 따라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전략물자를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COCOM에서 WA로의 전환은 수출통제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모든 국가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하되, 최종 수요자와 용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려가 있는 수출에 대해서만 통제하는 '비확산 수출관리' 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캐치올 통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거의 모든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하는 캐치올 통제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수출통제 체계에서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업무가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에 일원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산업성과 함께 일본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도 눈여겨 볼 만 하다. CISTEC은 도시바 공작기계 불법수출 사건 이후 수출통제 이행 강화를 위하여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수출통제에 관한 동향 연구, 제도 홍보와 교육, 기업 지원,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CISTEC는 산·학·관 연계채널로서의 기능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출통제 관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수출통제의 또 다른 특징은 2010년 「외환법」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해 성령에서 정하는 준수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모든 수출자 및 연구자는 물품이나 기술의 수출 대상이 수출통제 리스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 내 책임자를 선임하고, 조직 내에서 법령의 준수를 위한 필요한 지도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자율준수 프로그램(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의 도입은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수출통제 표준에 부합하는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우리나라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지역 구분을 가, 나의1, 나의2 지역 세 가지로 둔 것과는 달리, 일본은 수출지역 구분을 보다 상세하게 한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먼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3에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A~D 지역 네 가지로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대하여(운용통달)」 주석을 통해 국제체제별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총 14개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2019년 對한국 수출규제 당시, 이 구분표에 ㄹ(리) 지역을 추가하여 우리나라를 별도 분류한 바 있으며, 2022년 10월에는 반도체 리소그래피 관련 품목의 통제 강화를 위해 ㄷ(토) 지역③을 신설하기도 했다.⁴¹⁾

한편, 2017년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전략”과 공급망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한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꾸준히 인식해 왔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외국인투자규제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기도 했다.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일본의 2019년 對한국 수출규제 당시⁴²⁾⁴³⁾, 일본은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전략물자인 ‘반도체’ 소재를 통해 경제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은 최근 자국의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였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 기간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첨단 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특허출원의 비공개 등 4가지 경제안전

41)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policy/anpo/law_document/tutatu/20221006_tutatu.pdf”

42)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김규판) | 2021.11

43)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 경제책략과 공급망 강화책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김규판) | 2022.10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한다. 이 법은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공급확보계획을 심사하고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⁴⁴⁾⁴⁵⁾

또한, 일본은 최근 적격성 평가 제도(시큐리티 클리어런스)⁴⁶⁾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안보상의 비밀정보를 다루는 사람의 자격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중요경제안보정보를 새롭게 규정하고, 이를 누설한 사람에게는 징역 5년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고 한다. 이 제도는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도 처벌 대상으로 하며, 정보 취급자에 대한 자격 평가를 실시하여 정보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이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의 기술 패권 경쟁과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며, 일본이 경제안보를 중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수출통제 제도의 교육과 홍보

1) 한국⁴⁷⁾

현재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교육 및 홍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근거해 전략물자 관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먼저 교육의 경우, 온라인 사이

44)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슈분석'(김규판) | 2022.12

45)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특정중요물자 선정 현황 및 시사점" |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최정환) | 2023.1

46) 일본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관련 기사 : <https://asia.nikkei.com/Politics/Japan-to-craft-new-clearance-to-safeguard-economic-security>

47)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트⁴⁸⁾를 통한 교육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 두 가지로 나뉜다. 온라인 교육은 수출통제 제도 관련 일반 사항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제공하며,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든 들을 수 있다. 한편, 정규교육은 주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하반기 일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정규교육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주로 수강한다.

한편, 제도 홍보의 경우 매년 7월 '무역안보의 날'을 개최하여 무역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최신 수출통제 동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워크숍도 1년에 두 차례 개최하여 수출자들에게 최근의 제도 동향과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수출통제 관련 issue report를 발간하고,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최신 동향을 제공한다.

또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개정 등 우리 법령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거나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등 수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국제 동향이 있을 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전략물자길라잡이」 등 여러 발간물을 통해 수출자들의 제도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도 한다.

2) 미국

미국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서 수출통제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BIS에는 수출서비스국(Office of exporter services, OExS)이라는 별도의 부서가 있는데, OExS는 수출자 상담, 세미나 개최 등 아웃리치 활동, 교육, 컴플라이언스 지원 활동을 담당한다.⁴⁹⁾

48) 전략물자관리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ECLAT'(<https://edu.kosti.or.kr>)

49)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웹 사이트(<https://www.bis.doc.gov/index.php/about-bis/organization/program-offices>)

한편, 교육 콘텐츠의 경우, 온라인 교육 비디오를 유튜브와 상무부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BIS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강의로 진행되는 세미나도 개최되는데, 등록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약 미화 600달러)

미국의 아웃리치 활동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자국에서의 수출통제 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 아웃리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수출통제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매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수출통제 세미나(Joint Industry Outreach on Strategic Trade Management, JIO)'에도 BIS 고위급 인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최신 동향(update)를 설명한다. 이는 두바이, 베이징, 프랑크푸르트, 홍콩, 이스탄불, 뉴델리, 싱가포르 등 7개 도시에 수출통제담당관(Export Control Officer)⁵⁰⁾을 두어 각국 정부의 수출통제 협력과도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3) 영국⁵¹⁾

영국의 ECJU는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런던, 맨체스터, 뉴캐슬, 에딘버러, 애버딘 등 영국 전역에서 수출통제 기초, 수출통제 중급, 수출허가 과정 등 세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강의들도 개설하기도 한다.⁵²⁾

또한, 브렉시트(Brexit)나 대러시아 수출통제 등 제도에 중대한 변

50) <https://www.bis.doc.gov/index.php/enforcement/oea/eco>

51) 영국 수출통제 연례보고서 2019~2022 (<https://www.exportcontroldb.trade.gov.uk/>)

52) "ECJU Training Booklet(Strategic Export Controls Training Bulletin)" | 2021.7

화가 있을 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연례적으로 런던에서 '수출통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수출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하여 국내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판버러 국제 에어쇼, 국방 조달 연구 기술 및 수출 가능성(DPRTE) 등 여러 무역, 방위 및 보안 전시회에 참가하여 수출통제 제도를 홍보하기도 한다.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아웃리치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일본 도쿄의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나 UAE 아부다비의 '국제방위산업 기술 및 보안 컨퍼런스(IDITS)'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국 제도를 홍보하는 등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영국의 수출통제 아웃리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업계와의 활발한 협력이다. ECJU는 비영리 무역조직인 ADS 그룹, 영국해군장비협회(BNEA), 해양산업협회(SMI) 등이 참여하는 방위 및 이중 용도 수출 그룹(EGADD)이라는 비영리 특수 조직에서 분기마다 개최되는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제도 홍보를 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2019년에는 수출 및 국제 무역 연구소(IOE&IT)⁵³⁾가 만든 멤버십 조직인 Export Control Profession의 창립 이사로 참여하였는데, 이 Profession은 수출입 통제 및 무역 제재 규정을 준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조직은 수출 통제 전문가로서, 멤버십 회원사들에게 제도 홍보 및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 영국은 수출자들의 제도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민간과도 활발히 소통하여 국제사회의 책

53) <https://www.export.org.uk/insights/ioe-news/new-export-control-profession-launched-at-london-symposium/>

임있는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4) 일본⁵⁴⁾

우리나라가 전략물자관리원과 협력하여 수출통제 아웃리치를 하는 것처럼, 일본 정부도 CISTEC(안전무역보장지원센터)과 협력하여 아웃리치를 진행한다. 다만, 전략물자관리원이 공공기관인 반면, CISTEC은 비정부기관인 것이 차이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원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일본 CISTEC은 멤버십을 운영하여 회원사들을 위한 저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CISTEC은 비정부 조직이므로, 회원사인 업계나 학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집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수출통제 시스템의 개선 및 절차 개선에 기여하기도 한다.

한편, 일본의 경제산업성(METI)와 CISTEC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제공하여 수출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출통제조직의 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안보 무역 교육세미나 및 컨퍼런스, 수출통제부서 교육세미나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일본은 1993년부터 매년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이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수출통제 세미나도 공동 주최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또한 해외 산업협회 및 연구기관과 활발히 교류하며 대내외 수출통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일본 수출통제 교육 중 눈여겨 볼만한 사항은 '안전보장무역(Security Trade Control, STC)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이 인증 프로그램은 수출통제 관련 단계별 시험을 개최하여 합격 시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는 수출자들의

54) "CISTEC's Roles and Activities" | CISTEC | 2017.7

동기 부여와 전문성 증진을 위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 : 일본 STC 프로그램의 종류 >

- 1) STC-Associate : 2004년 시작 / 연 3회 시험
- 2) STC-Advanced : 2015년 시작 / 연 2회 시험
- 3) STC-Semi-Legal Expert : 2013년 시작 / 연 1회 시험
- 4) STC-Legal Expert : 2008년 시작 / 연 1회 시험
- 5) STC-Expert : 2005년 시작 / 연 1회 시험

5. 전략기술의 의미와 국제 공동연구 현장에서의 수출통제 제도

1) 전략기술⁵⁵⁾의 의미

앞서 언급한 바,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전략물자등에는 물품 등 물리적인 품목의 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도 포함⁵⁶⁾된다 (이하 전략기술). 따라서 전략기술의 수출(또는 이전)에 대한 통제 또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기술의 이전도 물건의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외국인과의 국내 연구 협력 또한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2014년 개정된 「대외무역법 시행령」⁵⁷⁾은 기술의 물리적 이전

55) "항공우주 분야 전략물자 관리 위반사례 및 기술이전시 주의점" | 채수홍 | 2019

56)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제1~2호

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57)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기술이전)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2. 지시, 교육, 훈련, 실연(實演)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

3.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

뿐만 아니라 구두 상담, 이메일, 팩스를 통한 정보 교류 등 비물리적 형태의 교류도 전략기술 이전의 범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모든 형태의 이전에 대해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이나 연구소 등 국내 연구 현장에서는 전략기술 관련 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부의 허가 없이 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법령 위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점차 증대되는 국제 공동연구의 중요성으로 인해 전략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인식 강화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기술의 수출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 수입국의 기술 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수출자 및 구매자 등이 고려되며, 위반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은 기술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허가 기술이전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가능성이 높은 자문, 지도, 공동 연구 등에 대하여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22년 11월, 우리 정부는 전략기술 관리의 중요성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통제기술 설명회'⁵⁸⁾를 개최하였다. 이 설명회는 국내 연구 기관들에게 전략기술의 관리와 통제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제 평화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동 설명회에서 정부는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주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무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

처리장치를 통한 이전
5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대학·연구소 대상 통제기술 설명회 개최" | 2022.11.2

임을 밝혀 전략기술 수출통제 이행 지원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2) 국제 공동연구 현장에서의 수출통제 제도

전략기술의 의미를 통해 알아보듯이, 국제 공동연구 현장에서의 수출통제 제도 이행은 기술이전 방식이 다양해지고, 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연구 현장에서도 장비와 물품 등만이 수출통제 대상이라고만 인식했던 것이, 해당 물품과 연관된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통제로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술의 무허가 이전은 인력 교류를 통한 유출 위험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국 유학생이나 연구자 등 외국인과의 공동연구나 교육 훈련을 통해 기술 유출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기술 유출 방지 만큼이나 국제 공동연구 등 자유로운 연구 활동 또한 중요하므로, 연구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각국의 기술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일본은 비자 스크린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국은 기술 유출 방지와 공동 연구 촉진 모두를 위하여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해당 수단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다.

먼저, 2022년 7월, 미국 상무부 BIS는 대학 및 대학 법률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Attorneys, NACUA) 연례 회의에서 새로운 "Academic Outreach Initiative(학술 교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BIS는 이 이니셔티브를 대학들의 EAR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수출관리 준수 프로그램(Export Management Compliance Program, EMCP)의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령, 무허가 기술이전 등 기술유출

우려가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Outreach Agents(교류 담당자)"를 배정하여 대학 관계자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게 하거나, EMCP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교수, 직원 및 학생들이 EAR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⁵⁹⁾⁶⁰⁾

한편, 앞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비자 스크리닝' 제도를 중심으로 상세히 알아보겠다.

전략기술 무형이전 방지를 위한 비자 스크리닝 제도⁶¹⁾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민감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연구, 교육, 또는 기술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할 때 적용되며, 특히 민감한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나 기술 교류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비자 스크리닝 제도에 따라, 연구인력의 비자심사 시 신청자의 배경 (Background), 연구 분야, 방문 목적, 연구에 대한 자세한 계획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자가 전략기술을 불법적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과거 연구 활동이나 신청자와 연계된 기관, 단체의 배경까지도 세밀하게 조사한다.

미국의 경우, 민감한 물품, 기술, 정보의 불법 수출과 기술탈취, 스파이 활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Visa Mantis'⁶²⁾라는 특별한 비자 스크리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이민법」에는 스파이 활동, 기술탈취, 반정부 행위 등을 목적으로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비자 발급

59)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enforcement/3205-bis-export-enforcement-year-in-review-2022-final-003/file>

60)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enforcement/3040-academic-outreach-initiative-policy-memo-final/file>

61) 「수출통제총람(2020)」 / 전략물자관리원 저

62) <https://www.shihabimmigrationfirm.com/green-card-permanent-residency-u-s-/consular-processing/security-advisory-opinion/>

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Visa Mantis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다. 즉, 이 제도는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시점에 미리 위험 가능성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자에 대한 보안 우려가 있을 경우 국무부에 비자 심사 의견을 요청한다. 국무부는 상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영사관에 회신한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신청자의 배경, 연구 분야, 방문 목적 등이 철저히 검토되며, 특히 기술 탈취나 스파이 활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한편, 영국은 자국의 경제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학문기술승인제도(ATAS)라는 비자 스크리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7년 11월에 도입되었으며, 첨단 재래식 군사 기술,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전달 수단과 관련된 민감한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지식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TAS는 영국 내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된다. 최초 제도 도입 시, 영국에서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학생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주제를 연구하는 대학원 학생들만 대상이었으나, 2021년부터 국제 연구자들까지 포함하도록 심사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민감 분야의 유학생 혹은 연구자는 해당 과목을 공부하거나 연구하기 전에 ATAS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⁶³⁾

ATAS는 방문 학자 및 연구자에게도 적용된다. 일례로, 본 연구를 위해 훈련기관(에딘버러 대학교)의 방문 학자(Visitor) 초청장 발급을 위한 신청서에 ATAS 해당 여부를 선택하는 란이 있었으며, 만일 ATAS에 해당할 경우 초청장 발급 절차가 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63) <https://www.gov.uk/guidance/academic-technology-approval-scheme>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방문학자 초청장 발급 신청서 상 ATAS, 수출통제 관련 내용>

ACADEMIC TECHNOLOGY APPROVAL SCHEME (ATAS)	
CAH3 code for proposed activity:	
Is an ATAS certificate required?	Yes / No (delete as appropriate) If yes, complete below
Has visitor been advised of ATAS need and given CAH3 code/agreed abstract?	Yes / No (delete as appropriate)
EXPORT CONTROL	
Applicants must refer to and follow the Export Control Policy where an international visitor is to be hosted or if the visitor is in the UK and material may find its way overseas (e.g. a UK organisation whose parent company is overseas). Where due diligence is required, the document must be provided along with this application.	
Will you be dealing with an international visitor?	Yes/No (delete as appropriate) If Yes, Export control due diligence must be carried out. If No, you must only be dealing with a UK entity.
Is the work as planned compliant with Export Controls?	Yes / No (delete as appropriate) If Yes, then the visit may be authorised. If No, an Export Control licence is required.
Has an Export Control licence been secured?	Yes / No (delete as appropriate) If Yes, then the visit may be authorised. If No the visit cannot commence until the licence is secured.

다만, 영국/아일랜드, EEA,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한민국, 스위스,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국적자 등에게는 일부 예외 사항이 적용되기도 한다.

ATAS 신청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민감한 분야를 연구하고자 할 때나 ATAS 증명서를 발급받아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일본 정부 또한 외국인 연구인력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유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학술 스파이 방지와 국가 안보 보호를 명분으로 하여 신흥 및 첨단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0'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 심사 및 비자 발급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다른 나라의 기술을 노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대학은 첨단기술 연구분야의 유학생의 신분 및 출신 심사를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⁶⁴⁾

또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여 중요한 연구 성과나 기술을 해외로 반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⁶⁵⁾

이처럼 주요국들은 외국 인력이 자국 연구에 참여하는 초기 단계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전략기술의 무허가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주요국들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Export Control Compliance Program, CP) 구축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제도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주요 대학 홈페이지에 수출통제 제도와 관련된 별도의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고, 연구자들이 전략기술 이전 시 관련 절차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담당자들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본 과제를 위한 훈련기관(에딘버러 대학교)에는 등 영국의 주요 대학에서 수출통제 담당관(Export Control Officer)이 대학에 상주하여, 전략기술 여부 판단부터 수출허가 과정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수출통제 당국 등과 협력하여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64) "일본의 과학기술·경제안보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슈 분석'(김규판) | 2022.12

65) "外国人研究者の入国厳格に 政府、渡航歴・資金源を審査(외국인 연구원 및 유학생 입국 심사 강화)" | Nikkei | 2022.8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미국 브라운 대학교

특히, 영국에는 HEECA(Higher Education Export Control Association)라는 고등교육기관(대학)의 수출통제 제도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민간 기구도 있다. HEECA는 수출통제 당국(ECJU)과 협력하여 각 대학들에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Export Control Compliance Program, CP) 구축을 지원하고, 수출통제 최신 동향을 공유하며, 크랜베리 대학교, 에딘버러 대학교와 공동으로 교육을 개발하여 제도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⁶⁶⁾ 이는 앞서 언급한 EGADD 등 영국 수출통제 당국이 민간과 협력하여 수출통제 제도 인식을 제고하는 또 다른 선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3-4)장에서 살펴본 바, 일본은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해 성령에서 정하는 준수기준을 지키도록 규

66) <https://heeca.org.uk/>

정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안전무역보장관리 웹 사이트에 대학과 연구기관을 위한 별도 페이지가 마련해 두었다.⁶⁷⁾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가이드를 통해 대학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Q&A를 제공하는 등 연구 현장에서의 수출통제 제도 준수를 지원한다.

경제산업성 안전무역보장관리 웹 사이트

대학 및 연구기관 전용 페이지

이처럼 주요국들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의 수출통제 제도의 이해와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 공동연구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전략 기술의 무허가 이전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7) <https://www.meti.go.jp/policy/anpo/daigaku.html>

Ⅲ.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이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역사적 흐름과 주요국의 정책과 아웃리치 현황, 마지막으로 전략기술과 국제공동연구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1장에서는 국제수출통제체제 제도의 개념과 등장 배경, COCOM부터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로의 발전, 그리고 최근의 신형 기술패권경쟁으로 인한 각국의 수출통제 강화 동향까지 살펴보았다. 수출통제 제도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으로 무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이후 냉전 시대에 COCOM이 등장하여 수출통제 제도의 기틀을 다졌다.

1994년 COCOM의 해체 이후 바세나르 협정(WA) 등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가 등장하며,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UN 결의 1540호 채택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량파괴무기 및 관련 물자의 전 공급망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수출통제 제도 이행률이 제고되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어 기술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와 같은 고도의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과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는 1989년 한-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공식적인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외무역법」의 시행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3년 캐치올 규제의 도입과 2014년 전략기술 이전 규제의 본격적 실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출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글로벌 흐름과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속에서 신기술 보호 및 유사 입장국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는 「대외무역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행령, 고시 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략물자의 판정부터 수출허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다. 전략물자 판정에는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이 있으며,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최근 동향으로는 對러시아 수출통제 및 북한에 대한 감시대상품목(Watch-list) 추가 등을 통해 국제 평화 유지 및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며, 신기술 보호와 국제적 연대 강화 속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장에서는 각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최근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다양한 법령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EAR이 핵심이다. EAR은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재수출 및 국외이전을 통제하는 규정으로, 국가안보 강화 및 경제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에는 「수출통제 개혁법(ECRA)」과 「외국인투자위험현대화법(FIRRMA)」이 제정되어, 인권 보호, 부패 방지, 신기술 및 기반기술의 보호 등을 수출통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했다.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핵심 중 하나는 역외규정이다. 역외규정은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조된 외국 제품이 특정 대상

에게 제공될 때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한다. 특히, 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과 De minimis 규칙은 미국산 콘텐츠를 포함한 외국 제품의 재수출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은 신기술 보호, 국가안보 강화, 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수출통제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역외규정을 통해 자국 기술과 제품의 국제적 이동과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알아본 EU의 수출통제 제도는 EU 이사회 규정에 기반하여 각국은 개별적인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이였다. EU는 최근 기존의 이중용도 품목 위주의 다자체제 위주의 제도에 변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이에, '경제안보 패키지'를 발표하여 신기술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EU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조율된 수출통제 제도의 강화를 예고했다. 즉, 이중용도 수출통제 규정 개정을 통해 민감성이 높은 신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규제를 통해 국가 안보 위협을 검토하여 제3국의 기술 개발 및 혁신 활동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영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영국도 이전에 EU 회원국이었던 만큼, EU 수출통제 제도와 관련이 있다. 영국은 「수출통제령(Export Control Order, ECO 2008)」을 통해 EU 규정을 바탕으로 자체 법령을 구축해 왔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은 수출통제 체계에 큰 변화를 두지 않았으며, 무기, 이중용도 상품 및 기술, 인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이동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고문 장비나 억압적인 정권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인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상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안전 및 인권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투자법」을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첨단기술 분야 사업체 인수에 대한 심사 체계를 확립했다. 국제 정세에 발맞춰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안보 및 국제 평화를 위한 제도 운영에 힘쓰고 있다.

한편, Export Control Joint Unit (ECJU)이 수출통제를 담당하며, 여러 부처의 직원들이 모여 만들어진 이 조직은 관계부처 간 협력의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와 최근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4대 수출통제체제의 초기부터 참여한 수출통제 선도 국가 중 하나다. 도시바 공작기계의 COCOM 위반 사건 이후 전략물자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다.

일본의 수출통제는 경제산업성에 일원화되어 있으며, 안전보장무역 정보센터(CISTEC)는 수출통제 이행 강화를 위해 설립됐다. 2010년 외환법 개정으로 전략물자 수출 기업 및 연구기관에 준수기준이 명시됐으며, 최근에는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적격성 평가 제도(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도입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이 국제 기술 패권 경쟁과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장에서는 주요국의 수출통제 아웃리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이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며, 7월에는 '무역안보의 날'을 통해 인식을 높이고,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CP 워크숍을 통해 수출자들에게 최신 동향을 설명한다. 또한, 중요한 법령 변경이 있을 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issue report 등의 발간물을 통해 수출자들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미국은 상무부 산하의 산업안보국(BIS)이 수출통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주도하며, 온라인 교육 비디오와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미국의 세미나는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가 강의로 구성된다. 한편, 미국은 해외 아웃리치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수출통제 인식 제고에 기여한다.

영국은 Export Control Joint Unit(ECJU)이 다양한 교육 과정과 연례 심포지엄을 통해 수출통제 인식을 높이고, 전략물자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브렉시트나 대러시아 수출통제 등 법령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영국의 아웃리치 중 주목할만한 점은, 업계와의 협력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과 CISTEC이 수출통제 아웃리치를 진행하며,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제공한다. 특히, '안전보장무역 자격증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자들의 전문성 증진을 지원하는 부분도 주목할만 하며,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와 같은 국제 행사를 통해 대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전략기술의 의미와 국제 공동연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략기술은 국제 평화에 위해가 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하며, 해당 기술의 수출이나 이전은 각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구두 상담, 이메일, 팩스를 통한 정보 교류 등 비물리적 형태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

전략기술의 관리와 인식 강화는 최근 기술패권 경쟁과 국제 공동연구의 증대 등이 어우러져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외국인 연구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와 유학생 비자 스크리닝 제도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취하여 전략기술의 무허가 이전을 방지하고 있다. 미국의 'Visa Mantis' 비자 스크리닝 제도나 영국은 '학문기술 승인제도(ATAS)'가 이에 해당된다. 일본 또한 체류 심사 및 비자 발급 체계 강화를 통해 전략기술의 유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2) 수출통제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해 본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운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신기술 보호 등 경제안보를 위한 수출통제의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 보호와 부패 방지를 포함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한 국제 공조 동참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다행히, 2024년 1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통과⁶⁸⁾되어, 국제체제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전략물자로 지저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수출통제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닦았다고 볼 수 있다.

조직 측면에서는 영국의 ECJU나 일본의 경제산업성 처럼, 수출통제 관계부처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연례로 개최되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에서 나아가, 일상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통합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수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도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제도 개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지속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수출통제 품목이 아니었던 캐치올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러시아 데스크'도 운영⁶⁹⁾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부담을 다소 감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제도 중 '역외규정'을 고려하여, 수출자들이 무허가 수

6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4.1.24.

6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대러 수출통제 관련 업계 궁금증 해소" | 2022.3.16.

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영국에서 활동하는 민간 수출통제 기구처럼, 업계나 학계 등 민간 차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인 수출통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해외 아웃리치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나 싱가포르 JIO에 참여하고 있으며, '무역안보의 날'에 미국 수출통제 관계자를 초청⁷⁰⁾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사 입장국간 결속이 지속 강화됨을 고려하여, 이러한 네트워킹을 좀 더 활발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자 스크리닝과 같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자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구축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주요 국가들이 이미 시행 중인 대학 및 연구기관 대상의 아웃리치 활동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국제 공동연구 환경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7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함께 지킨 무역안보! 신뢰 받는 무역강국!(「2023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 2023.7.5.

IV. 참고문헌

- "China Restricts Export of Chipmaking Metals in Clash With US" | Bloomberg | 2023.7.3.
- "China imposes export curbs on graphite" | Reuters | 2023.10.20.
- "Historical Background of Export Control Development in Selected Countries and Regions" | Tamotsu Aoi | 2016.4
- 「수출통제총람(2020)」 | 전략물자관리원 | 2020
- 「경제안보와 수출통제」 | 정인교·조정란·이은호 | 2023
- NSG 웹 사이트 : <https://www.nuclearsuppliersgroup.org/>
- AG 웹 사이트 : <https://www.dfat.gov.au/publications/minisite/theaustraliagroupnet/site/en/introduction.html>
- MTCR 웹 사이트 : <https://www.mtcr.info/en>
- WA 웹 사이트 : <https://www.wassenaar.org/about-us/>
-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對러시아 제재...무엇이 금지되고, 허용되는가" | 이코노미 조선 207호(권소담) | 2022.3
- 「수출통제의 이해」 | 전략물자관리원 | 2015
- 「코콤, 우리의 대응방안: 내부통제제도」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 1990
- "(특별기고) 전략물자(COCOM) 수출입 공고 해설" | 전자진흥(기고자 : 남기만) | 1993.8
-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남북경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홍익표) | 2005.8
- "(특별기고)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제도와 업계의 대응방안" | 전자진흥(기고자 : 박영복) | 1992.10
-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

2023.6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아시아 무역안보 정책 공조 및 기술통상 협력 강화키로” | 2021.11
- “정부, 北위성 관련 물품 수출통제한다...!워치리스트' 보완” | 연합뉴스 | 2023.4
- “한미 '암호화폐' 북한인 동시 제재...!인공위성' 품목 수출통제” | KTV | 2023.4
- 「미국 수출통제 안내가이드」 | 전략물자관리원 | 2021
- “미국 수출통제 제도 심층 분석 및 시사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2022.5
- “인권을 근거로 부과되는 수출통제 및 제재” |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Brief Vol.2 (박효민·이인화)」 | 2022.12
- “미국 수출통제 제도 심층 분석 및 시사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2022.5
- “수출통제제도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 연구”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제72집(박언경·왕상한·정관선) | 2023.9
- “경제제재/수출통제 관련 외국법령 역외적용 동향 및 시사점” |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Brief Vol.1 (김준범·박정민)」 | 2021.6
- White paper on Export Controls (COM(2024) 25 final) | EUROPEAN COMMISSION | 2024.1
- “EU의 경제안보 입법, 선진 정책인가 생존 전략인가” | KDI 세계는 지금 | 송은지 | 2023.6
-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탈현) | 2023.7
- Regulation (EU) 2021/821
- 미·중·EU의 국가·경제·기술안보 전략과 시사점” | STEPI Insight 제 300호(백서인·윤여진·성경모·양승우 | 2022.8
- “영국의 「국가안법투자법(2021)」” |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2-1호(최창수) | 2022.1
- “Notice to Exporters 2023/24: further sanctions against

- introduced in December 2023" (www.gov.uk) | 2023.12
-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연구" | 전략물자 수출통제 Brief 2019 Vol.3(정하정) | 2019.11
 - "일본의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법무부 통상법률(송준헌) | 2022.2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policy/ampo/law_document/tutatu/20221006_tutatu.pdf"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김규판) | 2021.11
 -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 경제책략과 공급망 강화책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김규판) | 2022.10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슈 분석'(김규판) | 2022.12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특정중요물자 선정 현황 및 시사점" |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최정환) | 2023.1
 - 일본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관련 기사 : <https://asia.nikkei.com/Politics/Japan-to-craft-new-clearance-to-safeguard-economic-security>
 -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전략물자관리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ECLAT'(<https://edu.kosti.or.kr>)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웹 사이트(<https://www.bis.doc.gov/index.php/about-bis/organization/program-offices>)
 - <https://www.bis.doc.gov/index.php/enforcement/oea/eco>
 - 영국 수출통제 연례보고서 2019~2022 (<https://www.exportcontroldb.trade.gov.uk/>)
 - "ECJU Training Booklet(Strategic Export Controls Training Bulletin)" | 2021.7
 - <https://www.export.org.uk/insights/ioe-news/new-export-control-profession-launched-at-london-symposium/>
 - "CISTEC's Roles and Activities" | CISTEC | 2017.7
 - "항공우주 분야 전략물자 관리 위반사례 및 기술이전시 주의점" | 채수홍 | 2019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대학·연구소 대상 통제기술 설명회 개최”
| 2022.11.2
-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enforcement/3205-bis-export-enforcement-year-in-review-2022-final-003/file>
-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enforcement/3040-academic-out-reach-initiative-policy-memo-final/file>
- <https://www.shihabimmigrationfirm.com/green-card-permanent-residency-u-s-consular-processing/security-advisory-opinion/>
- <https://www.gov.uk/guidance/academic-technology-approval-scheme>
- “일본의 과학기술·경제안보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슈분석’(김규판) | 2022.12
- “外国人研究者の入国厳格に 政府、渡航歴・資金源を審査(외국인 연구원 및 유학생 입국심사 강화)” | Nikkei | 2022.8
- <https://heeca.org.uk/>
- <https://www.meti.go.jp/policy/anpo/daigaku.html>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4.1.24.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대러 수출통제 관련 업계 궁금증 해소” | 2022.3.16.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함께 지킨 무역안보! 신뢰 받는 무역강국! (「2023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 2023.7.5.